

의안번호	2214119
의 퇴 인	남인순 의원
회 답 일	2025. 12. 16.
추 계 번호	25C6074

노인인권기본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63억 600만원(연
평균 32억 6,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시행 (안 제8조)	45	—	—	—	—	45	9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 (안 제12조)	45	—	—	45	—	90	18
노인인권영향평가 실시 (안 제13조)	597	597	597	597	597	2,985	597
노인인권통계 작성·관리 (안 제14조)	30	30	30	30	30	150	30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운영 (안 제15조)	6	6	6	6	6	30	6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안 제17조)	2,594	2,598	2,601	2,605	2,608	13,006	2,601
추가재정소요	3,317	3,231	3,234	3,283	3,241	16,306	3,261

주: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0조 (노인과시민사회등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노인인권 보 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1조 (연구사업 실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2항·제3항) 연구사업의 수행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2조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3조 (노인인권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제도 등이 노인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4조 (노인인권통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노인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인의 인권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5조 (노인인권정책위원회)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8	안 제16조 (특별위원회 설치)	노인인권정책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7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의무규정
10	안 제18조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9조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1조(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23조(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간병인 등 모든 사람의 돌봄 권리의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 및 요양서비스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돌봄, 생활공동체에서의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요양서비스가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24조 (참여할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5조 (교육, 문화등의 향유)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노인이 자신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교육·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을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27조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자료교환, 공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10조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1조(연구사업 실시)	×	
4	안 제12조(노인실태조사)	○	
5	안 제13조(노인인권영향평가)	○	○ 성평등가족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6	안 제14조(노인인권통계)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7	안 제15조(노인인권정책위원회)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8	안 제16조(특별위원회 설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9	안 제1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	
10	안 제18조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19조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	
12	안 제21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	
13	안 제23조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	
14	안 제24조(참여할 권리)	×	
15	안 제25조(교육, 문화등의 향유)	×	
16	안 제27조(국제협력)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0조~제11조, 제18조~제27조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내용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노인인권 보장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경비를 지원(안 제10조), 노인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연구사업 수행(안 제11조), 노인인권통계 작성·관리(안 제14조)
 -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안 제16조)
 -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 방지(안 제18조), 혐오표현 예방·방지 및 피해자 권리구제(안 제19조),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의 실현 및 노인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증진(안 제21조),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간병인 등 모든 사람의 돌봄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 및 요양서비스 환경 마련(안 제23조), 노인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참여·향유 증진(안 제25조)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24조)
 - 노인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자료교환, 공동 조사·연구, 국제협력 활동(안 제27조)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안 제8조·제12조~제15조·제17조)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노인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가 2019년 수행한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노인 인권 보장을 포함한 노인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2019년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4,430만원 소요)을 실시함
 - 본 추계에서는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사례와 유사한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5년 주기로 노인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4,500만원으로 추계

[표 2]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시행 (안 제8조)	45	-	-	-	-	45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12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제6차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제5조 에 따라 3년 주기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인 2023년도 조사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주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수행한 “제6차 노인실태조사”의 사전 작업을 위해 2022년 “노인실태조사 사전연구” 용역(4,470만원 소요)을 실시함
- 본 추계에서는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노인실태조사 사전연구” 용역 사례와 유사한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 실제 2023년 “제6차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에는 11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의 “인권”에 한정된 것임을 감안하여 노인실태조사 사전연구 소요재정을 유사사례로 반영

□ 추계결과, 3년 주기로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9,000만원으로 추계

[표 3]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 (안 제12조)	45	—	—	45	—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노인인권영향평가(안 제13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성평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노인인권영향평가 실시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성평등가족부의 유관 사례의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발굴 및 심층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업) 2025년 5억 9,700만원의 예산(전년동)을 편성

- 안 제13조제2항은 노인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정안 시행 시 구체화 될 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결과, 노인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억 8,500만원으로 추계

[표 4] 노인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인인권영향평가 실시(안 제13조)	597	597	597	597	597	2,985	5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노인인권통계 작성·관리(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인권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시설입소 노인의 인권과 노인학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6년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2,970만원 소요)을 실시함
- 본 추계에서는 노인인권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례와 유사한 3,000만원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노인인권통계를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억 5천만원으로 추계

[표 5] 노인인권통계 작성·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인인권통계 작성·관리 (안 제14조)	30	30	30	30	30	15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노인인권정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인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각 3회의 회의(본회의)를 개최하였고, 대면회의 시 회당 20만원, 서면회의 시 회당 10만 원을 지급
 - 2023년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2회, 2024년은 서면회의 3회 개최
 - 본 추계서는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 수가 개정안에 명시된 전체 위원 수 상한(20명)의 50%인 10명인 것으로 가정하고, 매년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 수	10	10	10	10	10	-	-
회의 횟수	3	3	3	3	3	-	-
회의수당 단가	0.2	0.2	0.2	0.2	0.2	-	-
추가재정소요	6	6	6	6	6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안 제17조)

□ 제정안에 따라 노인인권정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사사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23조의2는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
 - 위원회 사무기구의 인건비·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무처 운영비²⁾에는 29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표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주요 내용	비용추계 시 반영 여부
합 계	2,905		
기타직보수	800	부위원장·상임위원·전문임기제 봉급, 수당 등	부위원장 봉급, 수당 제외
상용임금	158	공무직 봉급, 수당 등	
일반수용비	362	위원회 회의 수당 등	단가 유지 가정
공공요금및제세	2	통신·우편요금 등	
특근매식비	5	특근매식비	단가 유지 가정
임차료	57	회의장 및 기타 임차료	임차료 제외
유류비	4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30	사무·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복리후생비	8	전문임기제, 상용직 복리후생비	단가 유지 가정
기타운영비	8	비서실 및 과 운영비	단가 유지 가정
국내여비	29	국내 출장비	단가 유지 가정
국외여비	29	국외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출장비	단가 유지 가정
사업추진비	28	위원회 회의 및 업무협의 추진비 ¹⁾	안 제15조의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외
관서업무추진비	41	대내외 업무협의 및 직원 워크숍 등	단가 유지 가정
직책수행경비	59	부위원장,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과장급 등 직책수행경비	부위원장 직책수행경비 제외, 단가 유지 가정
일반연구비	610	정책연구비	단가 유지 가정
민간위탁사업비	600	인구정책 평가 및 심층평가 등 위탁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제외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예산은 매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되다가 20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됨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에는 ‘정책소통 및 기본계획 홍보’ 사업이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사무처 운영비 예산만 고려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주요 내용	비용추계 시 반영 여부
고용부담금	34	상임위원, 전문임기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위원장 4대 보험 부담금 제외
자산취득비	42	보안SW·전산SW 라이선스 구입 등	

자료: 보건복지부

- 본 추계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비의 2025년도 예산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균 공무원임금 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하고, 수당 단가는 유지되며, 단가 유지를 가정하지 않은 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³⁾하여 추계

- 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두고 있으며, 회의장 마련 등을 위한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가정하고, 별도의 임차료와 민간위탁사업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비는 2025년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경우 8개월분의 예산만 반영⁴⁾되어 있으므로,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

□ 추계결과,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30억 600만원으로 추계

[표 9]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사무기구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안 제17조)	2,594	2,598	2,601	2,605	2,608	13,006	2,6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회예산정책처 거시변수 전망치(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4) 보건복지부는 사무처 예산이 편성되기 전 4개월은 예비비로 지출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